〈별첨〉 개인신용대출 약관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제2조 (대출조건)	제2조 (대출조건)	
채무자의 대출금, 이자, 수수료, 대출기간, 상환방법 등 대출	채무자의 대출금, 이자, 수수료, 대출기간, 상환방법 등 대출	
조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	조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	표준 여신거래 기본약관과
관련 <u>법령이</u>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	관련 <u>법규가</u>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	통일(지구수정)
약정에 따라 정하기로 하며, 금융회사는 이를 대출실행이전에	약정에 따라 정하기로 하며, 금융회사는 이를 대출실행이전에	
채무자에게 설명하기로 합니다.	채무자에게 설명하기로 합니다.	
제4조 (원금과 이자 및 지연배상금)	제4조 (원금과 이자 및 지연배상금)	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	
② 이자 · 분할상환금 · 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	② 이자 · 분할상환금 · 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	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
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,	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, 대부업 등의	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	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	제9조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
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	<u>정하는 한도내에서</u>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	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반영
라 정한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	정한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	(18.4.30)
니다.	다.	, ,
지연배상금은 연체기간별로 차등화 된 율을 적용하기로 하며,	(삭제)	
최종 연체기간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율을 전체 연체기간에		

현행	개정(안)	비고
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.		
③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, 여신거래기	③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, 여신거래기	
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, 그때	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, 그때	
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,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	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, 제2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율에	
니다.	<u>의한</u>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	
제5조 (비용의 부담)	제5조 (비용의 부담)	
①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	①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	
률 등 <u>법령이</u>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서 정한 기	률 등 <u>관련 법규가</u>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서 정한 기	
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.	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.	
1. ~ 2. (생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	표준 여신거래 기본약관과
② ~ ③ (생략)	② ~ ③ (현행과 같음)	통일(자구수정)수정

현행	개정(안)	비고
제7조 (대출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)	제7조 (대출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)	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	
②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	②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	
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<u>법령이</u> 정하는 한도내에	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<u>법규가</u> 정하는 한도내에	
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	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	개정 대부업법시행령 반영
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.	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.	(14.9.19)
③ 중도상환수수료는 기간별로 차등화된 수수료율을 적용	③ 중도상환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실제 대출	
하고 만기일까지의 잔존일수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	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되며,	
기로 하되, 제6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해		
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		
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.		